#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51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 안규백·황정아·염태영

김남희 • 부승찬 • 안태준

이병진 · 김준혁 · 오세희

박용갑 의원(10인)

### 제안이유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으나, 군인 역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 임.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함은 물론,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그러나 과거부터 존재해 온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 등반 인권적인 병영 부조리로 인해 군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는 2015년 12월 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군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 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대통령의 통수를 받는 군을 조사·감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 국군이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군 인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는 감시·감독기관을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임명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문제 감시에 힘쓰기는커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사건을 모두 자의적으로 기각하는 등 군 인권침해 사 안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기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음. 이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한편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신뢰도 를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 사례로서 군인의 인권 보호에 커다란 걸 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 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 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 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안보와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병영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법률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군인등"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는 군인과 같은 법이 준용되는 사관생도·사관후 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군무원 등이 포함됨(안 제2조제1호).
- 다.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5조).
- 라.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실태조사, 군인기본권보호 및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업무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 바. 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군인등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등이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하여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안 제13조).
- 아. 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음(안 제14조).
- 자. 군인권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에 대하여 요건에 따라 각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차.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17조).
- 카. 군인권보호관은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장소·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등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가짐(안 제18조 및 제19조).

- 타.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기각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함(안 제21조).
- 파.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등에게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와 각종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하거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음(안제22조 및 제23조).
- 하. 군인권보호관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26조).
- 거. 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하되, 군인권보호관 은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 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 너.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더. 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454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 45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1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안보와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
    -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 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군무원
  - 2. "기본권"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장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을 말한다.
  - 3. "군인기본권침해"란 군인등의 기본권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범위를 넘어 침해되

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군인등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인등의 기본권 보호와 향상(이하 "군인기본권보호"라 한다)을 위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기본권침해에 대한 진 정과 조사 등 군인기본권보호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임용 등

- 제5조(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지위) ① 군인기본권보호 및 군인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
  - ②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
  - ③ 군인권보호관은 그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군인권보호관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 및 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등) ① 군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군인등이 군인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
- 2. 군인등의 기본권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및 국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군인기본권침해 및 군인등의 기본권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 군인권보호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4. 군인기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총괄, 종합 및 조정
- 5. 군인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이행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6. 군인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 7. 군인등의 기본권 상황에 관한 정기 · 불시 실태조사
- 8. 군인기본권보호 및 군인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9.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 인권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 10. 그 밖에 군인기본권침해 방지 및 군인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군인권보호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요청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회 상임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보호 및 군인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군인권보호관의 임기 등) ① 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군인권보호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제8조(군인권보호관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 무원(군인권보호관은 제외한다)
  - 3. 군인권보호관 임명일 전 3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정당의 당원
  -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군인권보호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제9조(군인권보호관의 신분보장) 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인권보호관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등

- 제10조(공무원의 임용) 군인권보호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조직) ①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 ②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보고서 작성 등) ① 군인권보호관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 군인기본권침해 방지와 군인기본권보호 관련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의장과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는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 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거나 다른 법률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장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조사와 구제

- 제13조(조사 대상) 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② 군인등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등이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인권보호관에게 그내용을 진정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또는 진정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피해자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인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부대 방문조사) ① 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통지 없이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방문조사하고 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또는 소속 직원은 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진정의 각하 등) ① 군인권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 1. 진정의 내용이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군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군형법」제4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진정 내용이 구체 적이고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7. 진정이 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9. 군인권보호관이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 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군인권보호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군인권보호관은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 제16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 백한 경우 군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군인권보호관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 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

- 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군인 권보호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군인권보호 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사기관과 군인권보호관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장관등" 이라 한다)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지체 없이 그 조치결과를 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군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② 군인권보호관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군인기본 권침해 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 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군인권보호관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 부대·기관 등의 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질문·검사권) ①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질문·검사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0조(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입회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21조(진정의 기각) ①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

각한다.

-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조사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그 소속 부대·기관 또는 감독 부대· 기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동일하거나 유사한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
  - 4.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군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군인권보호관에게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⑤ 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군인권보호 관이 권고한 내용과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23조(고발 및 징계 권고) ①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그내용을 고발하여야 한다.
  - ②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이나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국방부장관등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 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군인권보호관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고발을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 인권보호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5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한 군인 권보호관이 군검사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 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나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군사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 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제26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접수한 후조사 대상 군인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1. 의료ㆍ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 2. 부대ㆍ기관이나 장소 또는 시설 및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감

정 또는 다른 부대 ·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 3.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등의 군 내 구금·보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 4.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 5.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그 직무에 서 배제하는 조치
-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 및 정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국방부장관등에게그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27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기본권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군인권보호관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28조(조사의 비공개) 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한다. 다만,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에 대한 조사의 공개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29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군인권보호관은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전화·인터넷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 제5장 보칙

- 제3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비밀 유지의 의무) 군인권보호관, 그 소속 직원 또는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이나 제34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 파견된 직원 또는 파견되었던 사람 등 이 법에 따라 군인기본권침해 방지 및 군

- 인기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군인권보호관이 아닌 자는 군인권보호 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군인권보호관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공 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군인권보호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군인권보호관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군인권보호관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등의 장은 군인권보호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군인권보호관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칙

- 제37조(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2.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 한 사람
  - 3. 위계(僞計)로써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 4. 제13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군인기본권침해 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죄를 범한 때에는 처

벌하지 아니한다.

- 제3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자격 사칭) 제31조를 위반하여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긴급구제 조치 및 조사 등 방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사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5 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

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 4. 제26조제2항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
- 5.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